

『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6월 5일

나. 발 의 자 : 김인배, 김근아, 김복자, 박세진,
안장환, 안주찬, 한성희 의원(7명)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6월 7일

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인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규칙 제명 개정 및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여 의원 신분증 관리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도모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해당 규칙 문구 및 서식에 법령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

- 국회 출입시스템과 연동한 의원신분증 도입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등 의원들의 대외협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 - 현행 :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
 - 개정 :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
 - 목적규정에 있는 ‘용어의 약칭’을 이관(안 제3조)
 - ‘제식’을 ‘서식’으로 용어 변경 등
- 별표와 별지 서식을 개정
 - 별표의 신분증에 대한 디자인과 기재사항에 대해 개정함
 -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
 - “주민등록번호” ⇒ “생년월일”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,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, 「국어기본법」 제1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가. 본 규칙안은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규칙문구와 서식에 법령상

근거없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함과 더불어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규칙 제명 개정 및 알기쉽게 자구를 수정하여 의원 신분증 관리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- 또한 기존 의원신분증이 1995년 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왔으나, 현대적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상징성과 품격을 높이고 의원의 품위도 제고된다고 사료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